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년월일 : 2005. 11.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 지역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 국내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도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단체장의 의무(제4조) 시장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원대상(제5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 정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 지원방법(제7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 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설치(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마. 지원대상자의의무(제9조)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례안 : 불임 참조

4. 참고자료

- 가.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 나. 영주시학교급식조례 영주시의회 부결 안 1부
- 다. 관련 법령 1부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주시장 및 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의 배양
2.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 보장
4. 적정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산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이하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한다)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한다.

②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 정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③직영급식을 하는 자에게 식품비를 우선지원하며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상북도영주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중 추천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원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체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1인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

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지원 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통보

1. 우리 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아래 "불임1"과 같이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소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재의요구증인 조례와 대법원제소증인 조례에 대한 처리지침을 "불임2"와 같이 통보하니 소관 해당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본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 1부.
2.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제소증인 조례 처리지침 1부. 끝.

국무조정실장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특수교육보건과장), 행정자치부장관(분권지원과장)

[REDACTED] 전달 07/27
★서기관 정병규 회장 장상진

참조자

시행 식품안전기획단-167 (2004.07.27.) 접수 분권지원과-1781 (2004.07.27.)
우 110-70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 <http://www.opc.go.kr>
전화 3703-2156 전송 720-1162 / @opc.go.kr / 공개

00시(군·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시·군·구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군·구 교육청 관련국장

3. 시·군·구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군·구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 영주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한다.

② 영주시장은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때 까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명시된 영주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② 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농·수·축산물의 수급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영주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영주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영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영주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영주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주시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영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과장 각 1인
2. 영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영주시 교육청의 관련 과장 또는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1인
4. 영주시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7. 농·수·축산단체에서 추천한 자 각 1인

8. 영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자 2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 수 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영주시장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영주시장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지원 대상의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영주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소속된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4조

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전문개정 1999.8.31]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유아교육법 제7조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및 4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

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효율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 (표준규격화)

-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농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품질인증)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 5의2. "위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3조 (식품등의 취급)

- ①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흔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5조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제6조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기준과 규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